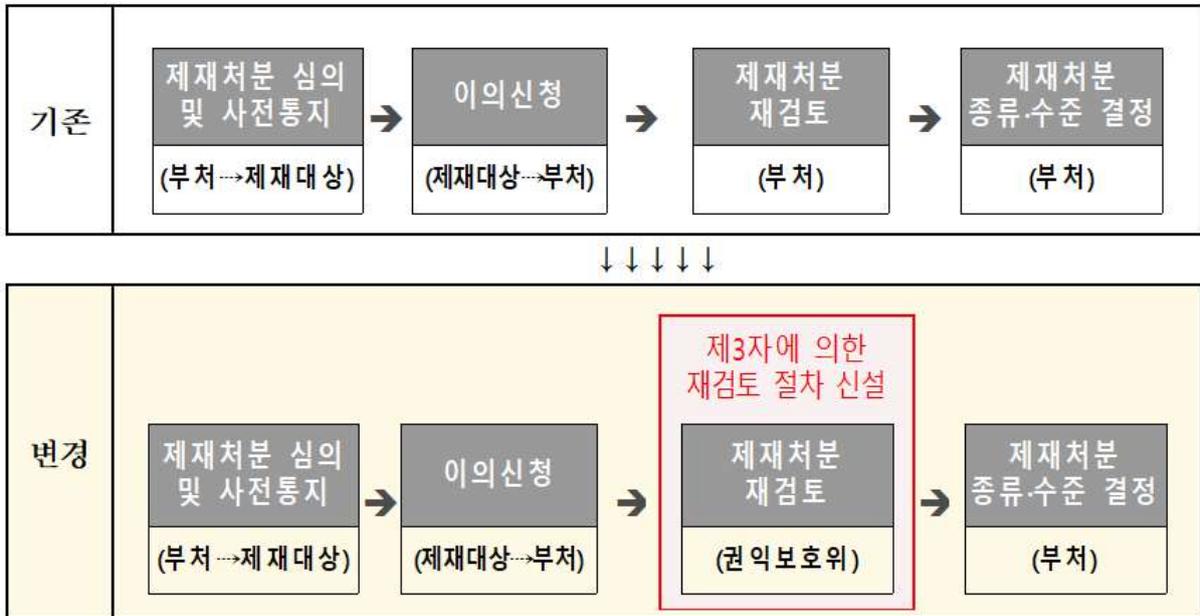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과기부 독립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제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따라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2021. 2. 22. 제1회 회의 개최하면서 출범하였습니다. 연구자의 요청시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 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



※ 단, 제재대상자가 희망시 기존과 동일하게 소관부처의 재검토 가능

신청 및 위원회 참여 경험

- (1) 연구책임자 교수는 교육부의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
- (2) 교육부에서 과기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로 이의신청서 송부
-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일정 통지, 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 빌딩 소재 등 KISTEP 회의실에서 이의신청 사안 심의
- (4) 연구책임자 교수는 위원들에게 이의신청 사유, 제출자료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함

+ 변호사는 연구자의 대리인 참석하여 보충 설명 등 심의참여 + 약 40여분 소요

(5) 교육부 사전통지 중 일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 받아들여 제재사유에서 제외하는

결정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